

해양수산부 예규 제123호

「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」(해양수산부예규 제86호, 2017.10.17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21년 07월 01일

해양수산부장관

1. 개정이유

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법령 제정 시행('20.7.30.)으로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예규 적용대상 근거 조문 개정 반영(안 제3조)

나. 재검토 기한 재설정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해양수산부예규 제 호

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예규안

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「항만법」 제51조”를 “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5조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2018년 1월 1일”을 “2021년 7월 1일”로,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대상) 이 가이드라인은 「항만법」 제51조에 따라 지정 · 고시된 항만재개발 대상항만,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마리나항만 또는 그 시설에 적용한다.</p> <p>제11조(재검토기한) 해양수산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18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12월 31일</u>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적용대상) ----- 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5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1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<u>2021년 7월 1일</u> ----- -----<u>6월 30일</u>----- ----- -----.</p>